

이사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

채 권 자 #####

채 무 자 주식회사 ##### 외 4

2016. 6.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백

담당변호사 이 진 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귀중

이사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

채 권 자 #####(#####-#####)

원주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백 담당변호사 이진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4 층(서초동, 양진빌딩)

전화 02-535-6903, 팩스 02-596-5550

채 무 자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

2. #####(19##. ##. ##. 생)

3. #####(19##. ##. ##. 생)

4. #####(19##. ##. ##. 생)

5. #####(19##. ##. ##. 생)

위 피신청인들 모두의 주소

원주시 #####

- 피보전권리
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권(또는 개별안건으로서 이사선임결의, 이사해임결의, 정관변경결의 각 무효확인청구권 등)
 2. 신주발행무효확인청구권

신 청 취 지

1. 별지1 기재 이사선임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의 각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채무자 #####, 사내이사 채무자 #####, 사내이사 채무자 #####, 감사 채무자 #####의 직무집행을 각 임시로 정지한다.
2. 별지2 기재 이사해임결의무효확인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3. 별지3 기재 정관변경결의 무효확인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이 2016. 3. 개최한 주주총회의 결의 안건 중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600,000주로 변경한 내용이 포함된 정관변경결의 일체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다.
4. 별지4 기재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은 법인등기부등본상 2016. 3. 31. 변경되어 같은 해 4. 5.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1주의 금액 5,000원인 보통주식 380,000주에 대하여 일체의 주주권 행사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I. 당사자들의 관계 및 가처분 제기 경위

1. 채무자 주식회사 #####(이하 ‘채무자 회사’라 합니다)은 부동산개발, 분양, 임대업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2. 4. 27.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 대표이사는 #####, #####이고, 설립시 발행주식은 20,000주였으나, 2016. 3. 31. 경 400,000주로 그 발행주식 총수를 증가시킨 회사입니다.

- 소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채권자 및 채무자들은 등기부상으로 전 사내이사, 현 사내이사와 감사이고, 또한 주주들인 바,

(1) 채권자는,

- 현재 회사의 주식 10,200주를 보유한 주주이자,

- 회사설립시부터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6. 2. 15. 해임되었으며,

(2) 채무자들은

①채무자 #####, #####, #####은 등기부상 각 2016. 1. 19. 취임하여 같은 달 20. 등기된 사내이사들이고, 그 중 #####은 대표이사이며,

②채무자 #####는 등기부상 2016. 3. 30. 취임하여 같은 해 4. 5. 등기된 자입니다.

3. 아래 상술하겠지만,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 및 그 전 대표이사들인 #####, #####와 수 차례 소송을 겪으며 대부분의 소송에서 승소한 자로서, 그 소송과정 중 채무자 회사의 주식 10,200주(신주발행 전 51%의 지분임)를 이전받은 사실이 있으나, 채무자 회사 및 그 전 대표이사 #####, #####는 이를 무시하고 채권자에게 전혀 어떠한 의결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선임, 이사해임, 정관변경을 자의적으로 행하고, 또한 신주발행까지 하여 채권자의 주식을 희석시키고 있기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소갑 제2호증의1,2,3,4 각 주식양도결정문 및 항고결정문 등(#####에 대하여 주식 8,000주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라는 주식양도명령)

- 소갑 제3호증의1,2,3,4,5각 판결문 등 (전 대표이사 #####, #####가 각 3,000주씩 이전하라는 판결)

(위 결정과 판결에 따르면, 산술적으로 채무자는 총 14,000주를 취득했어야 하나,

일부 중복되는 부분과, 주식처분의 사실을 모르고 진행된 부분이 있어, 현재 10,200주만 취득한 상황인 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술합니다)

이 사건의 이해를 위하여는 그 사건 배경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기에 간략히 그 경위를 기술하고 구체적으로 신청원인을 기재하겠습니다.

II. 이 사건의 기초적 배경사실

본 소송의 배경은 소갑 제3호증의 1,2 판결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위 내용으로 같음하고, 본 소송에서는 사건 이해측면에서 위 내용을 간략히만 기재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1. 채권자의 이 사건 부동산들 매입

채권자는 2011. 5. 16. 중고차매매단지 조성목적으로 소외 #####, #####로부터 원주시 ##### 임야 10,378㎡, 같은 ##### 임야 734㎡, 같은 리 ##### 임야 12,190㎡(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함)를, 금 36억원에 매입하고 금 3.6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현재, 위 부동산들은 지번변경과 병합을 통하여 원주시 #####로 되어 있습니다.

- 소갑 제4호증의1~4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2. 소외 #####, #####에게 계약당사자 지위양도와 금전대여

(1) 그 후 채권자는 위 상태에서 2012. 1. 26. 위 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소외 #####, #####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기 지급한 계약금 3.6억원은 위 #####, #####가 채권자에게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이 돈도 채무자 회사가 설립된 후인 2012. 9. 경에서야 지급했습니다.

(2) 그리고, 위 #####, #####는 채권자에게 부족한 중도금 6억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 제비용을 부담하고 이자를 대납해주겠다는 부탁을 하여, 채권자는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위 #####, #####가 지급할 이 사건 부동산들의 중도금 6억원(실제로는 대출제비용을 공제한 576,342,000원 입니다)을 대여해주었고, 그에 대하여 소외 #####는 금 6억원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 후 채권자가 위 공증증서로 강제집행한 것 중 하나가 소갑 제2호증 주식양도결정으로서 채권자는 그 결정으로 소외 #####의 주식 8,000주를 이전받은 것입니다.

- 소갑 제2호증의1,2 주식양도결정문(#####에 대하여 그 주식 8,000주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라는 주식양도명령)

(3) 또한, 채권자는 위 자들로부터 잔금대여의 부탁도 받고, 2012. 4. 27. 경 채권자 소유의 부동산(원주시 ##### 임야 11731m²)을 담보로 제공하고, #####에서 주식회사 #####을 주채무자로, #####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계약(15억원)의 물상보증(채권최고액 19.5억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러한 물상보증갯가로 약정한 것이 주식 30%이전, 수수료조 금 2.5억원의 지급이었고, 그 즈음 채권자는 사내이사로까지 등기된 것입니다. 당시, 채권자가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사로 선임되며, 채무자 회사 주식 30%를 이전받은 것은 사업파트너로서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외 #####, #####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잔금융도로 채권자의 물상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금(만기일 2015. 4. 27.) 15억원을 미상환하여, 그 부동산이 원주지원 2015타경#####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득이 채권자는 대위변제하고 주식회사 #####과 #####를 상대로 한 원주지원 2016가합##### 변제자대위금 등 사건으로 최근 1심 승소한 상황입니다.

- 소갑 제5호증 원주지원 2016가합##### 변제자대위금 판결문

3. 채무자 회사의 설립 및 그 후의 경과

(1) 그 후 소외 #####, #####는 2012. 4. 27.경 채무자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등기도 중간생략등기로서 #####, #####는 등기부에 빠져있고, 채무자 회사가 직접 매수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2년정도 후인 2014. 7. 23. 경 이 사건 부동산들에 복합상가인 소위 '#####'이라는 형태의 상가를 짓고, 외부회사인 주식회사 #####에 35억 원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4.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 #####, #####와의 소송관계 및 채권자의 주식취득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 그 외 #####, #####는 몇 건의 소송을 치렀는데, 이를 요약하면,

(1) 먼저, 위 언급 중도금 6억원대여와 관련된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에서 채권자는 #####의 주식 8,000주를 이전받았습니다.

- 소갑 제2호증의1,2 주식양도결정문(#####에 대하여 그 주식 8,000주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라는 주식양도명령)

(2) 다음으로, 위 언급 잔금 15억원의 물상보증에 대한 댓가로 주식 30%, 수수료 2.5억원의 약정에 관련된 소송으로서, 그 소송이 소갑 제3호증의1,2 판결문으로서, 그 사건 1심에서는 채권자가 전부 승소(2.5억원, 30%주식)하였으나, 2심에서는 2.5억원 부분이 파기되어 채권자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채권자는 주식 30%만 이전받았습니다(#####, #####의 주식 각 3,000주씩)

- 소갑 제3호증의1,2 각 판결문(전 대표이사 #####, #####가 각 3,000 주씩 이전하라는 판결)

(3) 따라서, 위와 같은 소송을 통하여, 채권자는 총 14,000주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나, 주식수 산정 문제 등으로 현재 10,200주만 보유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상술하겠습니다.

(4) 그리고, 그 외에도 채무자 회사 전 대표이사 #####의 배임 등의 문제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많은 분쟁이 있는 상황입니다(소갑 제9호증 가치분결정문, 소갑 제14호증 주주대표소송 사건내역서)

(5) 그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는 2016. 초 #####, #####에서 현 이사들로 모든 이사들이 변경되었고, 아울러 2016. 3. 경 신주 38만주를 발행하여 현재 총 발행주식수가 40만주가 되었습니다.

5. 소결

이상과 같은 내용하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III. 피보전권리

1. 개요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인 ①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권 (또는 개별안건으로서 이사선임결의, 이사해임결의, 정관변경결의 각 무효확인청구권 등), ②신주발행무효확인청구권은, 위 II 기초사실관계 4. 부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채권자가 소송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주식보유를 무시한 채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신주발행을 하여 문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채권자의 주식보유 및 채권자를 무시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상의 하자가 주 쟁점이기에 이에 대하여 사전 언급합니다.

2. 주식보유관계 및 주주총회,이사회결의의 하자와 관련된 기초설명

(1) 채권자는 이미 귀원 2015카합##### ‘장부 등 열람 및 등사가처분’을 통하여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가받았으나, 채무자 회사측에서 아직까지 주주명
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현재 주주명부 및 주주구성을 알지 못합니다.

(2) 채무자 회사가 공개하고 있는 주주구성

다만, 법인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 종전 소송에서 도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보면,
회사측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주식수,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먼저, 소갑 제1호증 회사법인등기부를 통해 2012. 4. 27. 회사설립시 발행주
식 총수 20,000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 다음으로, 소갑 제3호증의 1,2 2013년경 시작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가합##### 판결문(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을 보면 #####,
각 10,000주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최소한 소송이
시작된 2013년경 #####, ##### 각 10,000주씩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소갑 제3호증의 1,2 판결문 별지 중 발취>

<그림 삭제>

(다) 그런데, 2014. 8. 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주주명부(소갑 제6호증 주주명부)와, 2014. 연말기준 감사보고서(소갑 제7호증)를 보면, #####는 7,200주로 기재되어 있고, #####는 6,000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2014년 중 #####의 주식 중 2,800주와 #####의 주식 중 4,000주가 타인에게 이전된 것을 알 수 있는 바, 아래 2014회계년도 감사보고서 기재 주주구성을 본다면 ##### 주식 2,800주는 김인수에게, ##### 주식 4,000주는 #####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갑 제7호증 2014회계년도 감사보고서 중 발취>

<그림 삭제>

(라) 그리고, 다시 2015. 연말기준 감사보고서(소갑 제8호증)를 보면, #####, #####의 주식은 그대로인데, #####, #####의 총 주식 10,000주가 #####과 #####에게 각 4,000주, 6,000주씩 이전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소갑 제8호증 2015회계년도 감사보고서 중 발취>

<그림 삭제>

(마) 그리고, 다시 소갑 제1호증 최근 법인등기부를 보면, 2016. 3. 31. 경 유상증

자를 통하여 총 주식을 400,000주로 증가시킨 것이 확인됩니다.

(3) 법원 판결을 반영한 정확한 주주구성

그러나, 이러한 회사측의 주주변경 및 주주구성은 그 간 채권자와의 소송에서 도출된 주식양도결정, 주식양도판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만든 것인 바, 그 간 판결을 반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채권자는 ①소외 #####를 상대로 여주지원 2014타채#####호 주식양도명령으로 위 #####의 주식 중 8,000주를 양도받았으며, 이 결정은 2014. 10. 15. 확정되었고, 채무자 회사에는 2014. 8. 15. 이미 송달되었으며, ②또한, 소외 #####, 소외 #####,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한 여주지원 2013가합##### 판결문(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을 통해 위 #####와 #####로부터 각 3,000주씩의 주식을 이전받았으며, 그 소송은 위 ##### 등이 상고하지 않아 2015. 5. 26. 확정되었습니다(단, 신청인이 2.5억원 패소부분을 상고하여 패소부분에 대한 최종확정일은 2015. 9. 18.입니다)

- 소갑 제2호증의1~4 주식양도결정관련 결정문 및 송달,확정증명원
- 소갑 제3호증의1~5 주식양도판결관련 판결문 및 송달,확정증명원

(나) 따라서, 채무자 회사의 주식은 회사 성립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주권이 미 발행된 회사의 주식이라 민법상 지명채권양도방법에 따라 이전되므로,

①2014. 10. 15. 이미 채권자는 위 주식양도명령에 따라 당시 #####가 보유한 7,200주를 이전받았고 그 결정은 2014. 8. 18. 채무자 회사에 송달되었으며, 따라서 그 이후 #####의 주식을 이전받은 #####, #####에게 대항이 가능하고,

(위 주식양도결정에서는 8,000주의 양도가 결정되었으나, 위 언급과 같이 당시 #####가 7,200주만 보유하고 있었기에 7,200주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2015. 5. 26. 채권자는 다시 #####로부터 3,000주를 이전받았고, 그 판결문 또한 이미 2015. 5. 12. 채무자 회사에 송달되었기에,

(위 주식양도판결에서는 #####에게도 3,000주 이전을 명하였으나, 위와 같이 주식양도결정을 이미 받아 #####는 주식이 없는 상황이라 집행불능이 되므로, #####의 3,000주만 이전받게 됩니다)

③따라서, 이미 채권자는 2015. 5. 26. 부터 채무자 회사 총 주식 20,000주 중, 10,200주(51%)를 보유한 주주이고, 비록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신청인 회사가 계속 명의개서를 부당거절하여 못한 것일 뿐이므로, 아래 판례에 의하면 명의개서없이도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 92다#####]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고 더구나 그 후 주식양수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이 채권자는 2015. 5. 26.부터 채무자 회사 주식 20,000주 중 10,200주를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 이후 개최된 주주총회는 이러한 채권자에 대한 소집통지도 없고, 의결권도 부여되지 않은 채 개최되었기에, 본 건에서 그 무효를 다투는 것인 바, 이하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3. 피보전권리 - 각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 및 감사 선임결의, 이사해임결의, 정관변경결의의 무효확인청구권, 이사자격없는 자들에 의한 신주발행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

현재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경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고,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 없어,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언제 개최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여, 소갑 제1호증 채권자 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나타나는 내용을 통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개최를 추정하여 그 무효를 구하는 안건을 특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사선임결의, 감사선임결의, 이사해임결의, 정관변경결의 무효확인청구

권에 대하여

(1) 채무자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 2016. 1. 19.자 각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해 1. 20. 각 로登記된 채무자 #####, 채무자 #####, 채무자 #####의 기재가 있어, 그 즈음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고,

- 2016. 2. 15.자 해임 및 2. 19.자登記로 채권자의 이사해임기재가 있어, 그 즈음 채권자의 이사해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으며,

- 2016. 3. 30.자 변경 4. 5.자登記의 내용으로 ①발행주식총수를 80,000주에서 1,600,000주로 변경하는 기재가 있고, ②#####에 대한 감사기재가 있어, 그 즈음 정관변경 및 감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위와 같이 채권자는 이미 2015. 5. 26.부터 10,200주(51%)를 가진 주주로서 이사, 감사선임여부 및 정관변경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주식을 가진 주주였는데, 그럼에도 ①위 2016. 1. 19.경, 2. 15.경, 3. 30.경의 각 주주총회 개최시 채권자에게는 소집통지조차 하지 않았고(소집절차상의 하자) ②따라서, 채권자는 그 각 주주총회에 서 51%의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반면, 위 2부분 언급과 같이 당시

#####는 3,000주만 행사할 수 있음에도 채권자의 3,000주까지 포함하여 6,000주
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의 7,200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 #####도 채권자의 의결권인 그 7,200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되어, 단순히 채권자의 의결권을 배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의 의
결권까지 무단으로 대행 행사한 셈이 되어 버리므로(결의방법상의 하자), 그 2016. 1.
19.경, 2. 15.경, 3. 30.경의 이사 및 감사 선임, 이사해임, 정관변경 각 주주총회는 소
집절차 및 결의방법상 하자의 정도가 주주총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정
도¹입니다.

아래 판례를 볼 때에도, 주주명부상 주주라도 실제로 주주가 아닌 자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
하게 한 경우 위법하다고 보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채권자가 10,200주를 취득한 것은
법원 결정과 판결로 이미 채무자 회사에 송달되어 채무자 회사가 뻔히 알고 있는 상황
이었음에도, 채무자 회사는 위 각 주주총회에서 채권자에게 소집통지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채권자는 당연히 의결권행사에서 배제되었으며, 오히려 #####와, #####
로부터 7,200주의 주식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 #####이 채권자
의 의결권까지 대신 행사한 것이므로, 그 의결권행사는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
다.

¹ 상법 제 380 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 186 조 내지 제 188 조, 제 190 조 본문, 제 191 조, 제 377 조와 제 378 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대법원 96다#####]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만,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게 된다.

(3) 따라서, 채권자는 그러한 하자있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사선임, 감사선임, 이사해임, 정관변경결의의 각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신주발행 무효확인청구권에 대하여

(1) 그리고, 채무자 회사는 2016. 3. 31. 경 유상증자를 통하여 총 주식을 400,000 주로 증가시켰으나, 그 또한 유효한 유상증자가 아닙니다.

(2) 상술하면,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인 바, 신주발행 이사회결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2016. 3. 31. 경 회사의 이사는 2016. 1. 19. 경 주주총회에

서 신규로 선임된 3인의 이사 #####, #####, #####만 있었으므로 그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가’부분 언급과 같이 그들이 이사로 선임된 2016. 1. 19. 경의 이사선임 주주총회는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상 하자의 정도가 주주총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정도이므로 그러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결의한 2016. 3. 31.경의 자 유상증자결정은 이사회결의가 없는 유상증자결정이 되어 무효일 수 밖에 없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그러한 하자있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신주발행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4. 소결

위 언급과 같이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10,200주를 가진 주주임에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없었고, 의결권 행사도 배제되었던 바, 따라서 채권자는 ①그러한 주주총회들에서 결의된 이사선임결의, 감사선임결의, 이사해임결의, 정관변경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②또한, 그러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결의한 신주발행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도 있다 할 것입니다.

IV. 보전의 필요성

1. 법원판결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행태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위 언급과 같이 채무자 회사 및 그 이사들은 법규정, 법원판결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그들만의 규칙에 의한 그들만의 주주총회, 이사회를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사들이 행한 행태는 적법하지도 않고, 따라서 현재의 주주구성은 물론 경영진 구성은 전혀 고려의 여지가 없이 위법하여, 주주나 이사도 아닌 자들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러한 경영행태를 한시라도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2. 배임의혹으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및 주주대표소송의 진행에 대하여

(1) 나아가, 채권자는 이미 귀원 2015카합##### ‘장부 등 열람 및 등사가처분’을 통하여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하여 그 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주된 이유가 전, 현 대표이사들의 배임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를 문제삼기 시작하자, 위 #####는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처럼 만들었는데, 현재도 실제 회사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현 이사들은

위 #####가 형식적으로 내세운 사람들이거나, 실령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의 잘못을 전혀 묻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사로서의 의무를 전혀 행하고 있지 않은 자들인 것입니다.

- 소갑 제9호증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치분결정문

(2) 자세한 내용은 위 가치분결정문으로 대신하고, 위 #####의 배임행위를 간략히 기재하면,

(가) 위 II 기초적 사실관계 언급과 같이, 전 대표이사인 #####, #####는 2012. 4. 27.경 채무자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이전등기 되자마자, 2012. 5. 7.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담보로 한 대출이 시작되는데, 그 구체적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내역>

순번	대출시기	대상부동산	대출금액 (채권최고액)	채무자
1	2012.5.7.	소갑4	780,000,000	주식회사 #####
2	2012.9.13. (1번 근저당권 변경)	소갑4	3,380,000,000	주식회사 #####
3	2013.6.21.	소갑4	390,000,000	주식회사

				#####
4	2013.12.18.	소갑4	3,185,000,000	합자회사 #####
5	2013.12.18.	소갑4	1,677,000,000	합자회사 #####
6	2013.12.19.	<u>위 1,2,3 근저당권 말소</u>		
7	2014.7.9.	소갑4	3,000,000,000	주식회사 #####
8	2014.7.23.	소갑4	200,000,000	주식회사 #####
9	2014.9.3.	<u>위 4,5 근저당권의 변경과 말소</u>		
9-1	2014.9.3.	소갑4	위4의 계약인수 근저당권자 변경 ->채무자 주식회사 #####	
9-2	2014.9.3.	소갑4	위5의 계약인수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변경 ->채무자 주식회사 ##### ->채권최고액 확장 : 금 4,403,000,000원	
10	2015.9.5.	<u>위 7,8 근저당권 해지</u>		
계	현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7,588,000,000원(위 9-1,2) ->채권최고액 기준이므로, 실채무는 그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위 대출 중 4,5번의 채무자로 등장하는 합자회사 #####은 소위 #####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입니다.

(나) 또한, 채무자 회사는 설립 후 2년정도 후인 2014. 7. 23. 경 이 사건 부동산들 위에 복합상가인 소위 '#####'이라는 형태의 상가를 짓고, 외부회사인 주식회사 #####에 35억원에 임대를 주었고, 3억원의 선수금도 받았습니다(소갑 제7호증 2014회계년도 감사보고서 제14페이지, 소갑 제10호증 재무상태표 참조)

(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채무자 회사는 위와 같이 ①대출금 7,588,000,000원, ②

입대보증금과 선수금 3,800,000,000원의 합계인, 총 11,388,000,000원의 유동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2014 회계년도 회계감사보고서(소갑 제7호증) 및 귀원 2015카합5033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치분 결정(소갑 제9호증)에 의하여 획득된 자료들의 분석에 의하면 위 110억원 상당의 자금들의 부당한 유출이 의심되는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1) 먼저, 소갑 제7호증 채무자 회사의 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변제가 허위차입으로 인한 배임거래로 보입니다.

가) 즉, 소갑 제7호증 감사보고서 11페이지, 소갑 제10호증 2014회계년도 재무상태표를 보면 회사는 2014년도 회계년도 말 기준 금융권부채로 금 57.6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편 대표이사(소외 #####)로부터 차입한 금원도 2013년도에는 약 71억원, 2014년도에는 20억원(71억원 중 일부 변제하여 20억원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이 있어, 위 금융권 부채가 거의 모두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 변제용과 일부 공사대금 변제용으로 쓰인 것이 확인됩니다.

[소갑 제7호증 감사보고서 - 제11~12페이지]

<금융권 차입내용>

<그림 삭제>

<대표이사로부터 차입 및 변제내용>

(3)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주.임.종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금액	
	당기	전기
대 표 이 사	2,077,731	7,135,622

나) 그런데, 위 대표이사 #####는 위와 같이 채권자로부터 토지매입대금조의 자금을 모두 조달한 후 그 변제조차 현재 완료하지 않은 자로서, 회사에 71억원의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을 신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 특히, 위 소갑 제7호증 감사보고서 14페이지에 따르면 회사는 위 #####가 대표이사직을 겸하고 있는 (주)#####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고, 공사비도 아직 40억 상당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만일 위 #####가 회사에 진정한 대역을 했다면, 그 자금으로 이러한 공사비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을 것임에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소갑 제7호증 중 관련부분 인용 - 제14페이지]

<특수관계자 거래내용>

<그림 삭제>

라) 위와 같은 의심으로, 귀 원 2015카합5033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치분사건에서
도 그 대표이사 #####의 회사대여금 관련 통장자료 등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그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이 또한 그 대여의 허위성을 의심케 합니
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이 대표이사였던 소외 #####가 2013년도 71억원 상당을
회사에 대여하였다고 하나, ①채권자로부터 토지대금까지 빌리고,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을 정도로 그 자금력이 의심되어 대여여부도 불확실하고, ②설령 대여하였더라도
공사대금으로 썼을 것인데 위와 같이 공사대금조차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점을 볼 때,
대표이사 #####가 허위채권을 만들어 회사가 은행으로 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취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위와 같이 회사는 그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는
(주)#####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이사의 자기
거래로서 이사회 승인이 없는 위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는 공사계
약에서 대금 부풀리기가 매우 심한 상황이므로 그 대금 부풀리기를 한 것이 아닌지 심
히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 먼저, 일단 공사비로 제출된 금액을 자료상으로 확인해 보면,

①소갑 제7호증 감사보고서상으로, 2013년 말기준 5,239,545,000원의 공사비 채
무가 있다가, 2014년말 기준 남아있는 공사비 채무가 금 4,104,545,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위 금액은 당시 존재하던 채무를 의미하므로, 이미 변제를 완료한 채무는 제
외되어 있습니다)

[소갑 제7호증 중 관련부분 인용 - 제14페이지]

<특수관계자 거래내용>

<그림 삭제>

②소갑 제9호증 가치분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획득한 공사계약서 등에 따르면
(i)2012. 4. 15. 부지조성계약상 대금 2,145,000,000원, (ii)2013. 11. 20. 부대토목
공사계약상 대금 1,530,000,000원, (iii)2014. 6. 2. 자 건물공사변경계약서(3차)상 대
금 5,830,000,000원, (iv)2014. 10. 18. 자 엘리베이터 공사대금 450,000,000원으로
그 합계는 무려 9,955,000,000원에 이릅니다.

- 소갑 제11호증의1~4 각 공사계약서

그 중 변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소갑 제7호증 감사보고서 자료상에 미

지급된 공사비로 약 40억원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그런데, 이러한 공사비 지출의 적적성 여부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①일단 위 공사계약은 회사 설립시부터 이사였던 채권자에게 이사회개최 통지도 없이 체결된 이사의 자기거래로서 위법한 것으로서, 이러한 위법한 자기거래를 한 이상 충분히 공사비 부풀기를 할 개연성이 높으며,

- 소갑 제12호증 주식회사 #####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가 #####임)

②특히, 도심 외곽 ##### 상가는 창고형으로 1~2층 저층으로 짓는 그 특성상 건물
물이 매우 단순한 구조라 공사비가 많이 들지도 않을 것이 예측됨에도, 지나치게 공사
비가 많이 들었고,

③무엇보다도, 소갑 제13호증 2012. 9. 5. #####, #####가 채권자에게 제공한 사업개요서를 보면, 당시 공사비 관련 토목공사비 15억원, 건축비 42억원으로 총 57
억원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 공사비 부풀리기가 매우 심하게 이루어진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소갑 제13호증 사업개요서 중 발취]

<그림 삭제>

3) 특히, 이러한 공사비 부풀리기와 대표이사 대여금 채권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바, #####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무자 회사와 (주)#####을 이용하여, 자신이 위 #####에 공사비 채무를 지급한 것으로 하고, 그 대위변제금 만금을 회사의 회계상으로는 자신이 회사에 일시적으로 돈을 입금한 가수금 채권 형태로 관리하면서, 회사의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으로 구성된 110억원으로 변제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① 위 언급과 같이 회계상 대표이사였던 #####의 회사에 대한 채권은 모두 가수금 채권으로 되어 있어, 대표이사가 회사의 필요자금을 일시적으로 입금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② 위 소갑 제11호증 공사계약서상에서 확인되는 공사비 채무는 약 100억원 상당인데, 현재 회계자료상으로는 약 40억원 정도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회계상 약 60억원의 공사비는 이미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③ 소갑 제13호증과 같이 애초 예상공사비가 57억원 정도였음을 볼 때, 상당부분 자신이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위 #####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무자 회사와 (주)#####이라

는 두 개의 회사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높게 책정해 두고, 그 공사비를 자신이 직접 (주)#####에 지급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그 일부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채무자 회사의 은행대출금과 임차보증금 중 상당부분을 자신이 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3) 이러한 사정으로 채권자는 귀원 2016가합##### 손해배상 사건으로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데, 현재 회사측에서는 오히려 #####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의 임원들은 #####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거나, #####의 배임을 눈감아주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한시라도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에, 이렇게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 소갑 제14호증 주주대표소송 사건내역서
- 소갑 제15호증 위 사건 회사측 답변서 사본

3. 소결

위와 같이 채무자 회사 및 그 이사들은 ①법규정, 법원판결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현재 회사의 주주나 임원 모두 적법한 상태가 아니며, ②나아가, 전 대표이사 #####의 수십억원 배임의혹이 있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주주대표소송

에서 그 #####를 비호하고 있어 위 #####가 아직도 실경영자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현경영진이 비리를 눈 감아주고 있는 것 밖에 안되는 바, 이러한 점에서 본 건의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소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갑 제2호증1 여주지원 2014타채##### 주식양도결정 1심 결정문
- 소갑 제2호증2 수원지방법원 2014라##### 주식양도결정 항고심 결정문
- 소갑 제2호증3 송달,확정증명원
- 소갑 제2호증4 사건내역서
- 소갑 제3호증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 판결문
- 소갑 제3호증2 서울고등법원 2014나##### 판결문
- 소갑 제3호증3 송달증명원
- 소갑 제3호증4 확정증명원
- 소갑 제3호증5 사건내역서
- 소갑 제4호증의1~4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 소갑 제5호증 원주지원 2016가합##### 변제자대위금 판결문
- 소갑 제6호증 2014. 8. 경 주주명부
- 소갑 제7호증 2014회계년도 감사보고서
- 소갑 제8호증 2015회계년도 감사보고서
- 소갑 제9호증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치분결정문
- 소갑 제10호증 2014회계년도 재무상태표

- 소갑 제11호증의1~4 각 공사계약서
- 소갑 제12호증 주식회사 ##### 법인등기부등본
- 소갑 제13호증 사업개요서
- 소갑 제14호증 주주대표소송 사건내역서
- 소갑 제15호증 위 사건 회사측 답변서 사본

첨부서류

- 위 입증방법 각 1 부
- 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1 부

2016. 6.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백

담당변호사 이 진 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귀중

본 안 소 송

1.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의 소

채무자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6. 1. 19. 자 각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해 1. 20. 각 등기된 채무자 #####, 채무자 #####, 채무자
#####에 대한 각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의 소

2. 감사선임결의 무효확인 의 소

채무자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6. 3. 30. 감사로 취임하여 같
은 해 4. 5. 등기된 채무자 #####에 대한 감사선임결의 무효확인 의 소

별지2

본안소송

1. 이사해임결의 무효확인소

채무자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6. 2. 15. 자로 해임되어 같은
해 2. 19. 등기된 채권자 #####에 대한 이사해임결의 무효확인소

본 안 소 송

1. 정관변경결의 무효확인의 소

채무자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6. 3. 30. 자로 변경되어 같은 해 4. 5. 등기된 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600,000주로 변경한 정관변경내용이 포함된, 위 회사의 2016. 3. 개최 주주총회에서 행한 정관변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

별지4

본안소송

1. 신주발행무효확인소

채무자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6. 3. 31. 자로 변경되어 같은 해 4. 5. 등기된 신규 발행된 회사의 보통주식 380,000주에 대한 신주발행무효확인소